

#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제 안 설 명

○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!

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강동구 제2선거구 김종무 의원입니다.

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○ 본 조례는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.

○ 그러나 국가보훈대상자가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여야만 생활보조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, 거주지의 재개발, 재건축 등으로 불가피하게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다가 다시 전입한 국가보훈대상자분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3개월 가량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

- 이는 해당 조례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과도한 제한 규정으로, 타 지자체의 동일 수당과의 중복 수령을 막을 수 있는 최소 단위인 ‘거주 1개월’로 지원 대상 조건을 완화하여도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본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.
  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